

1. 개정이유

「학교체육진흥법」 제11조 개정에 따라,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.

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선수의 경우, 일반학생과 동일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해당 학생선수의 장애 유형과 특성으로 인해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원활한 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해당 학생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(안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교육부 소관부서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학교의 장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 및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최저학력의 기준 등) ① (생략)	제6조(최저학력의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학교의 장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</u> <u>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 및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